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



2023. 9. 11.

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(더불어민주당, 관악4)

- 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유정희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
   「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
 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
  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.
- □ 본 개정안은
  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개정에 따라
  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하기 위한
 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
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
 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- □ 이에 안 제4조제2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
  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
  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,
   안 제5조의2 신설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.
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
 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
   「장애예술인지원법」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을
   따르도록 했습니다.
  - □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창작물 구매 총액에서 미술관, 박물관의 소장·전시의 미술품·공예품 구매는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   감사합니다.